

#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315
----------	------

발의연월일 : 2021년 10월 18일

발의자 : 방미숙 의원

## 1. 제안이유

- 우리 사회의 가족형태 다변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라.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바.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 4.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5. 입법예고 결과

- 가. 입법예고기간 : 2021년 10월 18일 ~ 10월 25일
- 나. 의견 내용 : 의견없음

## 6. 부서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형태의 다변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의 장례를 원활 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방법)**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내용)** ①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

② 시장은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한 장례업체,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행기관은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비용을 신청한 경우, 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대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대행기관이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 화장 ”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 화장 시설 ”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 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삭제 <2015. 1. 28.>
11. 삭제 <2015. 1. 28.>
12. 삭제 <2015. 1. 28.>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제28조의 2·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 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 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 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 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